

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[제정 2004.03.01.]

[개정 2005.02.22.]

[개정 2005.12.05.]

[개정 2007.07.12.]

[개정 2012.02.09.]

[개정 2012.08.31.]

[개정 2015.07.06.]

[개정 2016.04.22.]

[개정 2016.04.25.]

[개정 2017.03.22.]

[개정 2017.06.30.]

[개정 2017.09.18.]

[개정 2020.01.22.]

[개정 2021.12.31.]

[개정 2022.04.25.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칙과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16.4.25.>

제2조(기능) “대학“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
2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
3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 기관의 행·재정 지원
4.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,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,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 관리
5.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 관리

6. 학교기업 유치 지원 및 협력연구소 설치 운영 지원
7. 부설연구소(연구센터) 설치 운영 지원
8. 간접연구경비에 관한 업무관리
9.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
10. 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
11. 학교기업운영 등 경영수익사업(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, 연구 및 개발업, 오락·문화 및 스포츠관련 산업, 학술연구용역, 부동산임대업, 전문직별공사업, 도매 및 소매업, 양식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,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, 음·식료품 제조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)
〈개정2006.9.8.〉 〈개정2017.6.30.〉
12.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

제2장 조직

제4조(단장의 자격)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〈개정 2012.8.31.〉

제5조(산학협력단 직원) ① 산학협력단에는 직원,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들에게 산학협력단의 업무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·연구 등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직제) ① 산학협력단에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산학관리팀을 두며 팀장은 대학에서 파견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〈개정2012.2.9.〉 〈개정2012.8.31.〉
〈개정2020.1.22.〉
② 산학관리팀의 분장 사무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〈개정2012.2.9.〉
〈개정2012.8.31.〉

제3장 회계

제7조(사업연도)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8조(회계관리) ① 산학협력단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.
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따로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.

제9조(회계기관)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,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직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이 임명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, 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출방법)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10만 원 이하의 소액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<개정2012.8.31.>

제11조(회계처리)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운영계산서, 현금흐름표)를 작성하여야 하며,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의한다.<개정2012.8.31.>,<개정2015.7.6>

제12조(결산)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
2. 운영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3. 현금흐름표
4. 부속서류

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·확정하여야 한다.

③ 산학협력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감사) 총장은 소속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정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수입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
3.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
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5.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
6. 이자수입<개정2012.8.31.>
7. 그 밖에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수입금<신설2012.8.31>

제15조(지출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·운영비
2. 산학협력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3. 대학의 시설·운영 지원비
4.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
5. 학교기업의 운영비
6. 산학협력단에 속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
7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업무 수행경비,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업무수행경비
8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
제15조의 2(보상금) ① 운영규정 제14조 제2호 내지 제3호 및 7호의 수입을 발생시킨 교직원 및 학생에게 순수입 금액의 5%이내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연구비 간접비에 의한 수입의 보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“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”을 적용한다.

<본조신설2012.8.31.><개정2016.4.25.>

제4장 학교기업

제16조(설치요건) ①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,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·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선·판매, 용역의 제공 등을 실시하는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를 강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,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.

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제5장 협력연구소

제17조(설치 및 반환요건) ① 대학교지 내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출연 연구기관,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(협력연구소)를 두기 위해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출연 연구기관, 산업체 등에게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

② 영구시설물은 연구실, 실험실습실, 연구원숙소 등을 포함하며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, 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.

③ 교지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은 당해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은 대학에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제6장 부속기관 및 연구소

제18조(설치 및 운영요건) ① 산학협력촉진 및 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소속의 부속기관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및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하며,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

1. 부속기관 및 연구소 설치 신청서(설치목적,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)
2. 부속기관 및 연구소 설치 발기인 명부
3. 연구진 및 기구표
4. 사업 및 연구수행 계획서
5. 운영재원 조달계획서

③ 산학협력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속기관 및 연구소의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7장 운영위원회

제19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, 교학처장, 기획홍보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처장, 산학협력단 부속기관(연구소)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, 재학생, 외부인사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<개정2012.8.31.><개정2016.4.22.><개정2016.4.25.><개정2017.3.22.><개정2022.4.25.>

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재학생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 <개정2017.3.22.>

④ 산학협력 관련 정책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정책연구팀을 운용할 수 있다.<개정2021.12.31.>

제20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
2.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단 및 부속기관(연구소)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5. 교외연구비, 간접연구경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
7. 학교기업에 관한 사항
8. 협력연구소 설치 운영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
9. 부속기관(연구소)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10. 산학협력단 예산·결산의 자문 및 심의. 단, 재원별 지원기관의 승인사항은 제외
11.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·심의·조정에 관한 사항<개정2021.12.31.>

제21조(소집 및 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6조의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8. 31.)

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7. 6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3. 22.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6. 30.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18.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1. 22.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2. 31.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4. 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